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4가단5248539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변론 종결2015. 6. 23.

판결 선고2015. 7. 7.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3,786,822원과 그 중 43,347,776원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4. 9. 22.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2009. 10.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A와 피고 D 사이에 2014. 2.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B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배당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0. 6. 29. 피고 A와 사이에 위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4,250만 원, 보증기간 2015. 6. 26.까지로 정하여 그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 A는 위 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채권보전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10. 2009. 10. 13.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1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A, 채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2) 피고 A는 2014. 2. 19. 피고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2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일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3,75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는 이 사건 1, 2 설정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312,232,28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용문통합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약 1억 6,000만원, F에 대한 차용금채무 3,750만원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1) 2014. 4. 21. 피고 A가 이자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5. 27.

중소기업은행에 43,347,776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439,046원을 지출하였고, 위 대위변제일 이후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합계 43,786,822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43,347,776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4.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4. 9. 22.까지는 위 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행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1 설정계약의 체결시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이 사건 1 설정계약의 체결일이 2009. 10. 13.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C는 2009년경 아들인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은행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 C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 A가 피고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1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1, 2호증만으로는 피고 C가 2009년경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 A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1 설정계약이 2009. 10. 13.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6호증, 을가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위 대출 당시 담보 제공이 가능한 그 소유의 서울 성북구 G아파트 302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A가 2011. 7. 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그로부터 약 2년 전에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예상하여 근저당권설정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 A가 2009년경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1 설정등기 채권최고액의 60%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1 설정계약은 그 등기설정일 무렵에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 2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설정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초가 되는 위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2014. 4. 21. 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고 A가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대위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A가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무자력 및 사해의사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위 각 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B, C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3,3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2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당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2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312,232,280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근저당권자 용문통합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3,750만 원,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등 채권최고액 합계 4억 6,9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2 설정계약 당시 위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 C의 항변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이 사건 1 설정계약 당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1 설정계약 당시 위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피고 B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 임의경매사건에서 2014. 11. 19. 매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 B이 위 경매절차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어떠한 배당금지급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의 대상이 되는 배당금지급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 B이 원고 주장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향후 추가배당절차 등에서 배당금지급채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마. 소결론

이 사건 1 설정계약의 경우 사해행위(2014. 2월경 근저당권설정계약)와 그 사해행위의 이행으로 마쳐진 이 사건 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2009. 10. 13.자 설정계약)가 불일치하는바,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나,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원칙인 이상 판결 주문에서는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의 취소를 명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안복열

별지